



## 5 교통사고 상담과 교통재해 공제

### 5-3 손해배상과 산정방식

#### (1) 손해배상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4 가지가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치료관계비	<input type="checkbox"/> 휴업손해보상
<input type="checkbox"/> 위자료	<input type="checkbox"/> 사망이나 후유증에 따른 보상(일실회익·위자료)

휴업손해보상에 관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약을 제시하는 공적인 서류(휴업손해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노동종사 중(잔업을 포함)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노동재해로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2) 손해배상의 산정방식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에는 자배책보험, 임의보험, 변호사회의 산출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배책보험의 경우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 등의 보상은 상한이 120 만엔입니다. 그 이외에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후유증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배책보험은 피해자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거부되는 일은 없지만, 대부분이 치료비에 충당되어 휴업보상이나 위자료가 조금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의보험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임의보험에 따라 상한이 있습니다.
변호사회의 산출방법	일본변호사회가 민사소송 때 산정하고 있는 방법. 또한, 교통사고의 책임이 가해자 쪽에 많은가, 피해자 쪽에 많은가를 판단하는 「과실비율」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으며,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